국외 지배주주 A 출자법인 B 출자법인 내국법인 100% 70% 90% ⦁납입자본금 비율：100%×70%×90%＝63% ※ 직렬출자관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§46③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§2③(주식의 간접소유 비율)을 준용하여 산출하며, 이 경우 “간접소유비율”은 “납입자본금비율”로 봄(국조령§47③(1))